

의안번호	2204244
의 퇴 인	강득구의원
회 답 일	2024.11.07.
추계번호	24D363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5제13항(선거공보) 및 안 제66조제3항(선거공약서)	후보자의 선거공보,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호, 제1호의2 및 제2호 ¹⁾ 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고, 비닐 코팅이 양면으로 된 종이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안 제60조의3제6항을 준용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5제13항(선거공보) 및 안 제66조제3항(선거공약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(적용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- 1의2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
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

2. 상세 사유

-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 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 사용(안 제 65제13항 등)
 -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을 제작할 때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종지와 녹색제품 종이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제지업체에 따르면, 일반적으로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 시 인쇄할 종지의 단가는 제작 수량, 선거비용제한액 등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, 제지업체, 기획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과 차이가 있음
 -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개정안에 따라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제작 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일반적인 녹색제품 종이 단가보다 낮아질 수 있음
 - 또한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제작해야 하는 점에서 협의를 통해 종이 단가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일반 종이 사용에 따른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
 - 다만,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한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 제작 시 후보자와 관련 업체들과의 협의 결과가 상이하고,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의 차이 등으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,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규모는 후보자 10명이 총 317,501,772매를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